



: 2017-06-29

대구지방법원

제 1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4구합208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REDACTED] 주식회사
피 고 1. [REDACTED] 시장
2. [REDACTED] 시장
변론종결 2014. 7. 9.
판결선고 2014. 8. 13.

주 문

1. 피고 [REDACTED] 시장이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766,385,630원, 농어촌특별세 38,319,260원, 지방교육세 71,277,3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REDACTED] 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12. 취득세 764,437,360원, 농어촌특별세 76,443,710원 및 2014. 1. 28. 취득세 391,519,450원, 농어촌특별세 39,151,9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시장의 부과처분

1)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시 ■■■동 ■■■(이하 '①토지'라 한다) 소재 ■■■동 ■■■동 ■■■아파트(이하 '①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관하여, 2006. 8. 31. '보증금액 178,641,76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09. 1. 23. 주택분양신탁계약(이하 '①분양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위 ①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건설의 재정상태 악화로 ①공동주택 신축공사가 중단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1. 10. 27. ①부동산신탁계약 제17조 제2항, 제18조에 따라 ①토지를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매각한 후 2012. 2. 20. ■■■주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피고 ■■■시장은 2014. 1. 15. '원고가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2011. 10. 27. ①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방세 부과 예고를 하고, 2014. 2. 3. 원고에게 취득세 766,385,630원, 농어촌특별세 38,319,260원, 지방교육세 71,277,3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①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 ■■■시장의 부과처분



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 위 ③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달 22. '보증금액 121,300,480,000원, 보증기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까지'로 하는 내용의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의 재정상태 악화로 ③공동주택 신축공사가 중단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09. 1. 9.까지 수분양자들에게 주택분양보증금 101,981,018,170원의 환급·이행을 완료하고, 2009. 10. 28. ③부동산신탁계약 제17조 제2항, 제18조에 따라 ③토지를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 ■■■■■시장은 2014. 1. 12. '원고가 주택분양보증이행으로 2009. 1. 9. ③토지를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취득세 764,437,360원, 농어촌특별세 76,443,71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③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주택분양신탁계약의 내용

원고와 대동종합건설, 청구, ■■■■■가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분양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택분양신탁표준계약서 (갑 제5, 10, 16호증)

제1조(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위탁자 겸 수익자인 대동종합건설, 청구, 엔피디(이하 '갑'이라 한다)이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건설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 사건 각 토지(사업계획승인서상의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위에 건축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 말한다.

제2조(신탁목적)

이 신탁의 목적은 갑이 토지위에 사업계획승인내용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하 '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거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양보증을 한 을(원고)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토지나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데 있다.



제7조(신탁부동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③ 을이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수분양자에게 분양이행을 하는 경우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을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처분금액을 지급한다.

1.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
2.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을의 채권

제12조(수익자)

① 이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원본수익자는 갑 및 갑의 분양계약이행을 보증한 을로 한다.
② 제1항의 원본수익자 중 갑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원본수익권과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1. 갑이 을의 보증금이나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보증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제3자가 신탁재산이나 수익권에 대하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
3. 갑이 을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제17조(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갑이 지급하되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분양보증을 한 을이 분양보증을 이행할 경우에는 을이 지급한다. (각호 생략)

② 갑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을이 환급이행하는 경우의 환급금, 환급이행에 따른 비용 등은 신탁사무처리 비용으로 본다.

③ 을이 제1항 및 제2항의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원본 또는 수익으로 지급하고,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비용으로 대지급한다.

제18조(신탁재산 환가에 의한 제비용의 총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황, 신탁사무 처리상 을이 과실없이 받은 손해 기타 신탁사무 처리를 위한 제비용 및 을의 대지급금을 총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갑에게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일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및 가액으로서 신탁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여 그 지급에 총당할 수 있다.

제22조(신탁종료)

신탁계약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23조(신탁종료시 신탁재산의 교부)

② 을이 분양보증을 이행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을이 분양이행을 할 경우: 을은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등기의 말소 및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신탁원본과 수익을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2. 을이 환급이행을 할 경우: 을은 신탁원본과 수익을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 을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것이기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등기를 통하여 취득한 이상 구 지방세법 제110조(2010. 3. 31. 법률 제10221호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적용을 배제할 법적·사실적 근거가 없는 점,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의 취지도 취득세의 본질에 비추어 수탁자의 신탁재산 취득은 취득자의 담세력과 연관지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인 점, 분양보증채무의 이행이나 제3자로의 매각은 신탁등기의 원인에 해당하는 신탁계약 자체가 예정한 신탁사무처리의 내용인 점, 원고는 신탁계약에 따라 먼저 주채무자이자 위탁자인 시행사에게 환급이행금을 청구하였고, 실무적 처리도 이와 다르지 않은 점, 분양이행의 경우 환급이 있을 수 없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가 있을 수 없고,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야만 적용되는 것이며, 원고가 신탁에 기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사업주체의 지위에 있었던 위탁자인 대동종합건설, 청구, 엔피디가 원고에게 신탁등기를 갖추어 신탁한 것이므로, 위 각 토지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의 주장

가) 피고 경산시장의 주장



실질적으로 원고가 분양보증채무를 환급이행의 방식으로 이행하면서 제3자에게 매각할 시점에 ①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경산시장의 ①처분은 적법하다.

나) 피고 ■■■시장의 주장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의 입법취지는 형식적인 취득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인 점, 원고가 분양보증 환급을 통해 취득하는 주택 및 부속토지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되는 점, 원고는 분양계약자에 대한 보증금환급이행으로 신탁계약상 각종 제한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점, 원고와 ■■■주택 및 ■■■건설 사이의 매매계약서에는 원고가 신탁자로 기재된 것이 아니라 직접 매도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점,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의 행사는 양도담보권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하기 위한 환가절차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신탁계약서에 따른 처분이라 하여 그 성질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보증금환급이행에 따른 ②, ③토지의 취득은 새로운 소유권의 실질적 취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시장의 ②, ③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 제2호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는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가목),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나목),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다목)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 제269조 제5항은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관련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고 신탁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마쳐지면 수탁자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한다고 하여 다시 수탁자가 부동산을 새로이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수분양자들에



게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①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등 참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두6761 판결 등 참조).

② 그런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해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는 것이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함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③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법상 신탁이 이루어지고 신탁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마쳐지면 수탁자는 형식상으로나 실질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분양대금을 환급하거나 신탁토지를 매각한다고 하여 다시 수탁자가 부동산을 새로이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식상으로는 부동산취득이 없고 실질상으로 부동산취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수탁자인 원고가 분양대금을 환급한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④ 이 사건 각 분양신탁계약에서는 ████████ 건설, 청구, ██████ 다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수분양자에게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서 분양보증을 한 원고가 분양보증을 이행할 목적(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말한다)으로 신탁부동산을 관리·분양 및 처분하는 경우까지 그 신탁목적(제2조)으로 하고 있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각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환급이행을 하는 경우 원고는 신탁원본과 수익을 이 사건 각 분양신탁계약 제7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고(제23조 제2항 제2호), 이에 따라 신탁원본과 수익이 있는 경우 원고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및 가액으로 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 및 신탁사무처리를 위한 제비용(제1호), 제12조 제2항 제3호에 정한 원고의 채권(제2호)의 순서에 따라 신탁재산처분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며(제7조 제3항), 그 잔여금액이 있는 경우 위탁자점 수익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제7조 제4항).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분양신탁계약에 따라 환급이행을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 2017-06-29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문중흠

 판사 김정기



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제111조 (과세표준)

⑤ 다음에 계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69조 (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⑥ 「주택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동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분양보증의 이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분양계약이 된 주택(복리시설중 일반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입 또는 건조에 의하여 연부로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3조(소규모 공동주택의 범위 등)

① 법 제2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이란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총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269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소규모 공동주택용 토지를 취득한 날(토지를 일시에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취득일을 말하며, 최종취득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부터 4년을 말한다.

■ 주택법

제40조(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⑥ 사업주체의 재무 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이 극히 불량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가 분양보증을 하면서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게 할 경우에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는 그 주택건설대지를 신탁할 수 있다.

제77조(업무)

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업무
4. 제40조 제6항에 따른 주택건설대지 신탁의 인수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45조(부기등기 등)

⑤ 법 제4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7-06-29

3. 사업주체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에 당해 대지를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 제106조(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① 법 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양보증 : 사업주체(제12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를 포함한다)가 법 제16조 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행하는 다음 각 목의 보증(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가목의 보증만 해당한다)

가. 주택분양보증 :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분양(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과 소유권보존등기를 포함한다)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해당 주택의 관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100분의 80 미만이고,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책임지는 보증 <끝>